

4. 산림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6,504호 1999. 8. 6.

개 정 이 유

산림법의 개정(1999. 2. 5, 법률 제5760호)으로 영림계획의 의무적 작성제도가 폐지되는 등 산림경영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폐지·완화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 요 골 자

- 가. 영림계획의 의무적 작성제도가 폐지되고 산림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림계획을 작성하도록 함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림소유자에게 영림계획의 작성을 지시하도록 하는 영림계획작성지시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함(현행 제9조 및 제10조 삭제)
- 나. 폐광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의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체조립비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폐광지역개발을 지원함(령 제24조의2 제1항제29호 신설).
- 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림을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체조립비를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창업부담을 완화함(령 제24조의4제4항제5호 신설).

- 라. 종전에는 택지개발사업 등의 부지에 편입되는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사업부지 총면적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 전용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 전용부담금을 전액면제하도록 하여 택지개발사업 등을 지원함(령 제24조의5제1항제3호).
- 마. 국유림안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공사중에 부수적으로 채취되는 토석을 당해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석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령 제80조제2호 신설).
- 바.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녹색자금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구분계리하도록 하고, 매년 녹색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령 제98조 내지 제102조.(104조 및 제105조 신설).
- 사.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녹색자금의 조성을 위한 녹색복권발행에 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복권발행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령 제103조 신설).